

주주제위

제 30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태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 회사는 상법 제 365 조 및 당사 정관 제 21 조에 의거 제 30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6 년 3 월 31 일(화), 오전 10 시

2. 장 소 :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5 층

3. 회의 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

- 감사보고
- 영업보고
-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

나. 부의안건

- 제 1 호 의안 : 제 30 기(2025.1.1.~2025.12.31.)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 - 정관개정(안)의 세부 내용은 별첨 1. 정관개정(안) 신규대조표 참고
- 제 3 호 의안 :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
 - 목적: 회사의 투자계획, 재무상태, 지급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재무유연성 확보를 위함
 - 자본준비금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할 금액: 30,000,000,000원

자본준비금 (주식발행초과금)(A)	자본금(B)	자본금의 1.5배(C)	감액가능 한도(A-C)
134,833,234,364 원	34,121,697,000 원	51,182,545,500 원	83,650,688,864 원

- 근거: 상법 제461조의2(준비금의 감소)에 의거하여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음

- **제 4 호 의안** : 이사 5 인 선임의 건

**개별상정, 개별표결함*

**선순위 의안 5 개가 의결되면 나머지 후순위 의안들은 자동폐기 됨*

- 제 4-1 호 의안 : 사내이사 권오혁 선임의 건 (이사회제안)
- 제 4-2 호 의안 : 사내이사 류재희 선임의 건 (이사회제안)
- 제 4-3 호 의안 : 사외이사 한재연 선임의 건 (이사회제안)
- 제 4-4 호 의안 : 사외이사 박천홍 선임의 건 (이사회제안)
- 제 4-5 호 의안 : 사외이사 윤갑석 선임의 건 (이사회제안)
- 제 4-6 호 의안 : 사내이사 김현수 선임의 건 (주주제안)
- 제 4-7 호 의안 : 사내이사 이병완 선임의 건 (주주제안)
- 제 4-8 호 의안 : 사내이사 홍헌표 선임의 건 (주주제안)
- 제 4-9 호 의안 : 사외이사 조용호 선임의 건 (주주제안)

- **제 5 호 의안**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출의 건

**개별상정, 개별표결함*

**선순위 의안 1 개가 의결되면 나머지 후순위 의안들은 자동폐기 됨*

- 제 5-1 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영빈 선임의 건 (이사회제안)
- 제 5-2 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주한 선임의 건 (주주제안)
- 제 5-3 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일 선임의 건 (주주제안)

- **제 6 호 의안** :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**개별상정, 개별표결함*

- 제 6-1 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한재연 선임의 건 (이사회제안)
**제 4-3 호 의안이 부결되면 자동폐기 됨*
- 제 6-2 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박천홍 선임의 건 (이사회제안)
**제 4-4 호 의안이 부결되면 자동폐기 됨*
- 제 6-3 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조용호 선임의 건 (주주제안)
**제 4-9 호 의안이 부결되면 자동폐기 됨*

- 제 7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 30 기 이사 보수한도	제 31 기 이사 보수한도(안)
₩5,000,000,000	₩2,000,000,000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및 지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(새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새도우보팅)제도가 2018 년 1 월 1 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주주 본인의 인감날인, 주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) 원본, 대리인의 신분증
(법인주주 : 위임장 원본, 법인인감 날인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대리인신분증)

2026 년 03 월

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57-10
주식회사 스 맥 대표이사 최영섭

직 인
생 략

별첨 1. 정관개정(안) 신구대조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 37 조(이사의 의무) ② 이사는 <u>선량한 관리자의</u> <u>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</u> <u>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u>	제 37 조(이사의 의무) ② 이사는 <u>그 직무를 수행함에</u> <u>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</u> <u>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</u> <u>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</u>	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관상 명문화
제 37 조의 2(이사의 책임감경)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 배(<u>사외</u> 이사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,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 37 조의 2(이사의 책임감경)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 배(<u>독립</u> 이사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,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사외이사 명칭변경

(신설)	<u>제 37 조의 3 (소수주주에 대한 보호)</u> <u>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진은 그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상법 제 466 조 제 1 항 또는 상법 제 542 조의 6 제 4 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사의 업무집행, 재산상태,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, 회사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u>	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
제 43 조(위원회)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. 감사위원회 (신설)	제 43 조(위원회)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 1. 감사위원회 <u>2. 보상위원회</u> <u>3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	회계처리의 투명성, 의사결정의 공정성, 보상의 적절성 등을 담보하기 위함

제 46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<u>사외이사</u>이어야 한다. (후단 신설)	제 46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<u>독립이사</u>이어야 한다. <u>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2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</u>	개정상법 반영
제 46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최대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그밖에 [상법 시행령] 제 38 조 제 1 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	제 46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③ <u>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 ④ 삭제	개정상법 반영
(신설)	부칙 1. <u>제 37 조의 2, 제 46 조 제 2 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, 제 46 조 제 2 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6 년 9 월 10 일부터 각 시행한다.</u>	개정상법의 시행일에 맞춰 부칙 규정 반영